

# 예산고등학교총동창회 회칙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 (명칭)

본회의 명칭은 예산고등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.

[영문 도메인 : [www.yesango.com](http://www.yesango.com)]

### 제2조 (목적)

본회는 동문회원간의 친선도모 및 상부상조, 회원의 권익보호 및 후생복지와 모교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- ① 본회의 사무소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둔다.  
(우) 340-807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70
- ② 본회의 산하조직 사무소는 각 해당 동문회(예산, 재경, 경기, 대전, 천안, 아산, 안산, 당진)에 둔다.

### 제4조 (산하조직)

-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지역에 동문회를 둘 수 있다. 또한 지역동문회는 직장 및 직능별로 분회 등의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.
- ② 동문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, 운영에 대하여 사전에 총동창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5조 (사업)

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장학금 조성 및 지원 사업
2.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업
3. 회원 간 친목도모 사업
4. 동창회보 및 명부 발행
5.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# 제6조 (회장)

본회는 본회를 상징하는 회장을 갖는다

(회장은 총동창회에서 승인된 총동창회 및 각 지역동문회에서만이 사용 할 수 있다.)



### 제7조 (회계년도)

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-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 제 2 장 회 원

### 제8조 (회원구성)

본회의 회원구성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9조 (회원자격)

- ① 정회원은 모교 졸업자로 본회 및 지역동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.
- ② 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고 지역동문회의 회원으로 가입된 자로 한다.
- ③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총동창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### 제10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
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- ①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본회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 단,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## 제 3 장 임 원

### 제11조 (임원의 구성)

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회장 1명
- ② 부회장 20명 이내
- ③ 감사 3명
- ④ 이사 150명 이내
- ⑤ 각 지역 동문회장
- ⑥ 사무총장 1명 . 사무국장 1명. 사무차장 2명
- ⑦ 10실 이내의 실장과 차장

### 제12조 (회장)
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### 제13조 (부회장)
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선임기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14조 (동문회장)

- ① 각 동문회에 동문회장을 둔다.
- ② 동문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지회를 대표하여 지회 업무를 총괄한다.

### 제15조 (감사)

①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감사의 의견 진술이 있을 때에는 감사도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6조 (동문회장의 선임)**

동문회장을 비롯한 지역동문회 임원의 선임은 각동문회에서 동문회의 회칙에 의거 선출한다.

#### **제17조 (이사의 선임)**

① 이사의 선임은 각 동문회장이 소정의 이사후보를 회장에게 추천하고 회장이 이를 승인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회장, 역대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(국장, 차장), 각실, 차장, 각 지역 동문회장,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③ 각 동문회의 역대동문회장은 상임이사가 된다

④ 이사로 선임 된 자가 2회 이상 위임장제출이나 아무사유신고 없이 2회 이상 총회나 이사회에 불참한 경우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.

#### **제18조 (임원의 임기 및 보선)**

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.

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이 보선한다.

#### **제19조 (명예회장)**

모교교장을 명예회장으로 한다.

#### **제20조 (자문위원)**

① 본회는 자문위원을 두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자문위원은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### **제 4 장 총 회**

#### **제21조 (총회)**

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#### **제22조 (정기총회의 소집)**

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2월 둘째주 일요일에 소집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#### **제23조 (임시총회의 소집)**

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이사회가 재적이사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할 때

3. 회원이 회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
#### 제24조 (총회 개최 통지)

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,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25조 (총회의 결의사항 등)

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.

1. 회칙의 개정
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3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(안) 승인
4. 감사보고서의 승인
5. 회원의 징계
6. 회비의 결정
7.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## 제26조 (총회 의결)

- ①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입후보한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다.

### 제 5 장 이 사 회

#### 제27조 (이사회회의 소집)

- ① 정기이사회는 년 2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이사 30인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일 10일전까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28조 (의결 정족수)

이사회의 의결은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#### 제29조 (이사회의 결의사항 등)

-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.
  1.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
  2.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
  3. 회칙에 규정된 총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② 이사회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및 분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### 제6장 사 무 총 국

#### 제30조 (사무총장)

- ① 본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.
- ②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, 사무국장, 사무차장을 둔다.
- ③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④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### 제31조 (부서의 조직 및 운영)

- ① 사무총국 산하에 업무 영역별로 부서(실)를 설치 운영한다.
- ② 각 실은 실장과 차장으로 구성한다.

### 제32조 (운영규정)

사무총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제 7 장 축 제 위 원 회

### 제33조 (개최시기 등)

- ① '예고인의 축제'는 매년 5월 둘째주일에 개최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② '예고인의 축제'는 총동창회가 격년제로 주최 주관하며, 집행위원회에서는 개최년도 정기총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 체육대회는 당해 연도 주관기수가 계획서를 축제추진위원회에 3월말까지 제출, 승인 후 운영하도록 한다.

### 제34조 (축제위원회)

- ① '예고인의 축제'의 효율적인 기획 및 집행을 위해 총동창회 산하에 축제위원회를 둔다.
- ② 축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1. 축제위원장 : 총동창회장
  2.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: 역대회장 및 현 임원
  3. 집행위원장 : 수석부회장
  4. 집행위원 : 총동창회 임원 이사
  5. 축제 집행위원회는 축제 후 1개월 이내 총동창회 회계감사를 득한 후 2/4분기 정기이사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.

## 제 8 장 재 정

### 제35조 (재정 수입)

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.

1. 입회비(졸업생)
2. 각 지역 동문회 연회비 (동창회비)
3. 찬조금, 장학기금, 총동창회 및 모교 발전기금(임원회비 포함)
4. 축제 결산 후 잉여금은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전환한다.
5. 기타 수입금

### 제36조 (재정운영)

- ① 본회의 재정운영은 모든 회비를 통합하여 사무총국에서 관장한다.
- ②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.
- ③ 예산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확정된 사업계획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하고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 9 장 장 학 사 업

### 제37조 (장학사업)

- ① 본회는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 우수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학법인 '사단법인

예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회' (이하 장학회)를 설립 운영한다.

② 본회는 '장학회'의 자금 확충 등의 필요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
### 제38조 (장학기금관리실)

① 본회는 사무총국 산하에 사업을 담당할 장학기금관리실(약칭: 장학실)을 설치, 운영한다.

② 본회와 '장학회'와의 유기적인 업무 체계 유지를 위해 본회의 사무총장은 장학회의 이사를 겸하며 장학기금관리실장(장학실장)은 장학회의 사무국장을 겸한다.

### 제39조 (임원선임 등)

장학회의 이사장은 총동창회장이 겸하며 이사는 총회에서 추천한다.

## 제 10 장 상 별

### 제40조 (예고인 대상)

예고인에 대한 최고의 대상으로서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각 지역동문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를 지역동문회장회의에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예고인의 축제에 즈음하여 회장이 시상한다.

### 제41조 (회원의 징계)

본회의 회원이 본 회, 모교, 국가 및 사회에 막대한 명예훼손을 하여 다른 회원에게 정신적, 육체적, 물질적 고통을 준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제명 또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알린다.

### 제42조 (상별규정)

상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에 의한다.

## 제11장 부 칙

1. 본 회칙은 198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회칙은 198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본 회칙은 1993년 5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본 회칙은 1994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본 회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본 회칙은 2001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7. 본 회칙은 200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8. 본 회칙은 200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9. 본 회칙은 200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10. 본 회칙은 201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11. 본 회칙은 2017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#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[목적]

이규정은 본회의 선거직임원의 선출과 임명직 임원의 피임명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### 제2조 [선거직임원]

제1조에서 선거직 임원이라 함은 본회의 회장을 말한다.

### 제3조 [임명직임원]

제1조에서 임명직임원이라 함은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중 선거직 임원과 역대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말한다.

### 제4조 [선거관리위원회]

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
##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

### 제5조 [구성]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과 간사1명으로 구성 한다.  
(선거관리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3명, 간사 1명)
-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, 선거관리위원은 본회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기내 선거 사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선거사무를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한다.

### 제6조 [직무]

-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,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장 유고시에는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위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5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보임하고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- ④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 [의사]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.부 동수인 경우에 그 결정권을 가진다.

## 제8조 [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]

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입후보자의 자격심사
2.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인
3. 총투표권수의 결정
4. 제16조 제①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양식의 결정
5.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
6. 선거공보의 발행
7. 투표용지·양식결정 및 투·개표 방법의 결정
8. 투·개표의 관리
9. 당선자의 확정보고

## 제9조 [문서발송]

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통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로 문서로서 행하여야 한다.

## 제10조 [임무완료]

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처리 완료 후 즉시 회장에게 선거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

### 제11조 [선거권]

- ① 동창회 이사는 선거권을 갖는다.
- ② 선거권을 가지는 정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1표와 표결수와 동수의 표수를 가진다.

### 제12조 [선거인명부]

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본회의 정회원의 명단과 투표권수를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소정기일까지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①항의 명부에 의의가 있는 회원은 소정기일까지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②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즉시 이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소정기일까지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소정기일까지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인명부를 확정한다.

## 제 4장 피선거권 및 피임자격



### 제13조 [입후보자격]

선거직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회 장

- 가.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으로서 취임예정일 현재 만 3년이상 각 기수에서 재직한 자로 한다.
- 나. 회원자격규정 제9조 제①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.

### 제14조 [피임자격]

본회의 임명직임원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.

- 1. 상임이사(각.실.처 차장) : 정회원으로서 취임예정일 현재 만3년이상 각 지회 및 각 기수에서 재직한 자로서 지회장 및 각 기수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.
- 2. 분과위원장 및 이사 : 정회원으로서 취임예정일 현재 만 1년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.

### 제15조 [자격제한]

- ① 피선거권자 또는 피임명자의 본회에 대한 제의무금이 입후보등록 마감일 또는 피임일 현재 미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선거권 또는 피임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
- ② 법류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본회의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는 동일직에 2회에 한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.

### 제16조 [입후보등록]

- ① 선거직임원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- 1. 입후보등록 신청서 1부
  - 2. 입후보 추천서 1부(이사 20인 이상)
  - 3. 입후보자 이력서 1부
  - 4. 명함판 사진 초본 1부
  - 5. 졸업증명서 1부.
  - 6. 입후보 등록금(이백만원) 영수증 1부.
  - 7.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### 제17조 [등록금의 귀속처분]

① 입후보자의 등록금 중 선거관리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은 차기 사무총국의 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.

### 제18조 [등록금의 용도]

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- 1. 선거관리에 관한 비용

### 제19조 [입후보등록 확정공고]

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 마감부터 7일 이내에 등록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거인단(이사)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제20조 [입후보자 공석시의 추천]

① 입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등록 마감후 입후보자의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입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공석되는 수의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제1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선거운동

### 제21조 [정의]

이 규정에서 선거 운동이라 함은 당선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
### 제22조 [ 선거운동기간]

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을 확정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### 제23조 [선거운동방법]

① 입후보자나 지지자의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거인단(이사)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횟수의 합동소신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입후보자의 소개소신 및 선거자료를 게재하여 선거인단(이사)에게 배부한다.

③ 입후보자나 지지하는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회칙에 따라 명예를 존중하고 모범적인 선거운동에 노력하여야 하며 본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 운동방법외의 행위는 일체 행할 수 없다.

### 제24조 [입후보자격의 박탈]

① 입후보자등록이 확정된 자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 결정은 본 회 이사

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② 입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당해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①항의 구정에 의하여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25조 [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]

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②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입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사회회의결로서 선거관리위원직을 박탈 할 수 있다.

## 제6장 투표와 개표

### 제26조 [투표와 개표]

① 투표와 개표는 따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서 실시한다.

②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, 단독 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추대형식으로도 선출할 수 있다.

③ 투표방법 및 투표용지와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27조 [재투표]

① 투표결과 최다득표자가 재적투표권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차점자와 재투표를 실시한다.

② 차점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차점자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차점자로 정한다.

### 제28조 [참관인]

①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.

② 참관인은 정회원으로서 입후보자가 지명하여 선거일 1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자이어야 한다. 당 해 년도 본회의 임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.

## 제7장 당선자의 결정

### 제29조 [당선자의 결정]

① 본회의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참석투표권수의 과반수 득표함으로써 당선자가 된다.

② 단일입후보자인 경우에도 총회에서 참석투표권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한다.

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를 한다.

### 제30조 [직접선출]

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.

1. 당선자가 없을 경우
2. 선거직임원 당선자가 취임 전에 사고 또는 취임할 수 없는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

### 제31조 [당선자의 발표]

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직임원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당해 총회에 출석한 회원에게 확정발표를 하고 동(同)총회일부터 7일 이내에 전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8장 일 정

### 제32조 [일정]

- ① 선거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: 선거일 35일전까지
  2. 선거인명부 작성 : 선거일 25일전까지
  3.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: 선거일 15일전까지
  4. 선거인명부 확정통보 : 선거일 10일전까지
  5. 입후보 등록: 선거일 10일전까지
  6. 입후보자등록 확정 : 선거일 10일전까지
- ② 제①항의 각 일정에 있어서 개시일 또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가산하거나 그 다음날에 종료한다.

## 제9장 부 칙

### 제33조 [위임]

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외에 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본 회칙은 200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회칙은 200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회칙은 201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회칙은 2016년 10월08일부터 시행한다.